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지출 승인안	1
2. 2025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48
----------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관리국)

나. 제 출 일 : 2025. 5. 23.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억 9,034만 3,500원, 징수결정액 55억 8,023만 6,161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4억 179만 6,681원이고, 11억 7,843만 9,480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88.21%, 징수결정액 대비 78.88%를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4,990,343,500	5,580,236,161	4,401,796,681	1,178,439,480	88.21%	78.88%
일반회계	3,962,000,500	4,406,521,990	3,228,082,510	1,178,439,480	81.48%	73.26%
특별회계	1,028,343,000	1,173,714,171	1,173,714,171	-	114.14%	100%

나. 세출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78억 5,976만 500원으로 이 중 31억 1,103만 7,889원을 지출하고, 11억 2,651만 4,2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44.57%에 해당하는 35억 347만 8,201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7,859,760,500	3,111,037,889	1,126,514,270	118,730,140	3,503,478,201	44.57%
일반회계	6,789,917,500	2,332,070,460	1,090,462,770	112,761,640	3,254,622,630	47.93%
특별회계	1,069,843,000	778,967,429	36,051,500	5,968,500	248,855,571	23.26%

3.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9억 6,200만 500원, 징수결정액 44억 652만 1,99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2억 2,808만 2,510원이고, 11억 7,843만 9,480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81.48%, 징수결정액 대비 73.26%를 수납하였음.
- 수납액 중 ‘세외수입’ 이 23억 6,520만원, ‘보조금’ 은 10억 1,784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가 5억 5,896만 500원, ‘조정교부금’ 2,000만원 순임.
- 부서별 미수납액을 총 11억 7,843만 9,480원 중 건축지원과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1억 3,953만 6,550원(96.7%)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대비	징수대비
합 계	3,962,000,500	4,406,521,990	3,228,082,510	1,178,439,480	81.48%	73.26%
세 외 수 입	2,365,200,000	2,927,219,490	1,748,780,010	1,178,439,480	73.94%	59.74%
조 정 교부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	100%	100%
보 조 금	1,017,840,000	900,342,000	900,342,000	-	88.46%	100%
보 전 수입 등 및 내 부 거래	558,960,500	558,960,500	558,960,500	-	100%	100%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대비	징수대비
합 계	3,962,000,500	4,406,521,990	3,228,082,510	1,178,439,480	81.48%	73.26%
주택상생과	1,573,591,500	1,461,281,680	1,454,916,780	6,364,900	92.46%	99.56%
도시계획과	201,000,000	127,970,220	127,970,220	-	63.67%	100%
건축지원과	1,877,350,000	2,385,533,050	1,245,996,500	1,139,536,550	66.37%	52.23%
부동산정보과	310,059,000	431,737,040	399,199,010	32,538,030	128.75%	92.46%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8,991만 7,500원이며, 23억 3,207만 460원이 지출되고, 10억 9,046만 2,77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2억 5,462만 2,63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7.93% 임.
-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전체 집행잔액 32억 5,462만 2,630원 중 25억 4,228만 1,350원(83.75%)으로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임.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6,789,917,500	2,332,070,460	1,090,462,770	112,761,640	3,254,622,630	47.93%
주택상생과	2,735,408,500	1,373,712,276	690,462,770	112,544,640	558,688,814	20.42%
도시계획과	3,035,476,000	93,194,650	400,000,000	-	2,542,281,350	83.75%
건축지원과	376,589,000	260,078,524	-	202,000	116,308,476	30.88%
부동산정보과	642,444,000	605,085,010	-	15,000	37,343,990	5.81%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억 3,140만 1,500원, ‘지출잔액’ 2억 6,805만 2,50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500만 9,630원, ‘예산절감액’ 1,015만 9,000원임.
- 특히, 도시계획과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25억 4,228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부서별 집행잔액(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원)

부 서	집행잔액	원인별 잔액 현황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 잔액
합 계	3,254,622,630	145,009,630	10,159,000	2,831,401,500	-	268,052,500
주택상생과	558,688,814	143,646,150	2,027,000	325,265,500	-	87,750,164
도시계획과	2,542,281,350	-	1,470,000	2,500,000,000	-	40,811,350
건축지원과	116,308,476	202,000	5,211,000	-	-	110,895,476
부동산정보과	37,343,990	1,161,480	1,451,000	6,136,000	-	28,595,510

라. 과다불용액 발생 사업

-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7건으로 특히, 주택상생과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100%)’ 과 부동산정보과의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100%)’ , 도시계획과의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99.98%)’ 등은 불용률이 70% 이상임.
- 주택상생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업은 용역 준공의 지연으로 불용률이 30%, 4,149만원이며, 9,681만원을 반납함.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 서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주택상생과 (2 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207,767,500	-	-	-	207,767,500	100%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138,300,000	-	-	96,810,000	41,490,000	30%
도시계획과 (1 건)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	2,500,500,000	475,000	-	-	2,500,025,000	99.98%
건축지원과 (2 건)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118,801,000	43,866,440	-	-	74,934,560	63.08%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12,090,000	8,402,500	-	-	3,687,500	30.50%
부동산정보과 (2 건)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	3,000,000	-	-	-	3,000,000	100%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1,970,000	1,207,000	-	-	763,000	38.73%

- 집행잔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은 3건임. 이 중 부서별 불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주택상생과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100%)’ 2억 776만 7,500원, 도시계획과의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99.98%)’ 25억 2만 5,000원, 주택상생과의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33.54%)’ 1억 3,274만 2,820원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 서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주택상생과 (2 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207,767,500	-	-	-	207,767,500	100%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진	395,730,000	85,073,590	177,913,590	-	132,742,820	33.54%
도시계획과 (1 건)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	2,500,500,000	475,000	-	-	2,500,025,000	99.98%

4. 특별회계 결산

가. 주차장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5,000만원 100%를 수납하였음.
- 수납액은 전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전년도이월사업비’로 1억 5,000만원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도시계획과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	100%

2) 세출결산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계획과의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 사업으로 총 1건이 있음. 예산현액 1억 9,150만원 중 3,64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5,507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80.98%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부 서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도시계획과 (1 건)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	191,500,000	36,425,000	-	-	155,075,000	80.98%

나. 건축안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건축지원과에서 예산현액 8억 7,83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 10억 2,371만 4,17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고 예산현액 대비 117%,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음.
- 수납액은 ‘세외수입’ 6억 9,338만 580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507만 5,310원과 ‘이행강제금’ 6억 7,830만 5,270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9,971만 2,591원 중 ‘순세계잉여금’ 2억 3,566만 41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999만원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406만 2,550원이며, ‘보조금’ 3,062만 1,000원의 전액인 ‘시·도비보조금등’ 순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 대비	징수 대비
건축지원과	878,343,000	1,023,714,171	1,023,714,171	-	117%	100%
세외수입	548,010,000	693,380,580	693,380,580	-	127%	100%
보조금	30,621,000	30,621,000	30,621,000	-	10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9,712,000	299,712,591	299,712,591	-	100%	100%

2) 세출결산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건축지원과의 예산현액 8억 7,834만 3,000원 중 7억 4,254만 2,429원을 지출하였고, 3,605만 1,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이 9,378만 571원으로 불용률이 10.68%임.
- 예산현액 대비 25% 이상 과다불용률 사업은 2건으로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25.19%)’ 와 ‘예비비(100%)’ 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건축지원과	878,343,000	742,542,429	36,051,500	5,968,500	93,780,571	10.68%

[과다불용률(25%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 서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건축지원과 (2 건)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155,346,000	95,386,549	14,865,500	5,968,500	39,125,451	25.19%
	예비비	43,874,000	-	-	-	43,874,000	100%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가.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없음

나. 예산 변경

-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 · 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2,810만원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7건			310,136,000	28,100,000	28,100,000	
주택 상생 과	1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87,005,000	18,000,000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례집 제작관련 부족예산 확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8,840,000	18,000,000	
	2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89,005,000	2,000,000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례집 제작관련 부족예산 확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6,840,000	2,000,000	
	3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1,500,000	1,500,000	주택임대사업자 방문신고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추가 구매 필요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3,000,000	1,500,000	
	4	보상주택 도입 · 지원	사무관리비	4,800,000	3,500,000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망원동 416-53번지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관련 일간신문 공고료 지급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	12,439,000	3,500,000	
	5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	14,439,000	2,000,000	주민설문조사 우편 발송 비용 예산 확보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공공운영비	945,000	2,000,000	
	6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10,000,000	600,000	민간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참여 전문가 수당 지급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	15,939,000	600,000	
	7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	14,939,000	500,000	공덕제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 공람 사항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에 따른 우편 비용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공공운영비	445,000	500,000	

6.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가. 일반회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총 2건, 4억 9,284만원임.

[일반회계 부서별 명시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총 2건			795,730,000	170,147,180	85,073,590	492,840,000	
주택 상생 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진	시설비	395,730,000	170,147,180	85,073,590	92,840,000	공덕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연내 공공지원 추 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도시 계획 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효율적 운영	시설비	400,000,000	-	-	400,000,000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착수일로부터 24개월)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 월 하고자 함

나. 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반회계에서 총 3건, 5억 9,762만 2,770원임.

[일반회계 부서별 사고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총 3건			1,181,835,000	870,130,180	272,507,410	597,622,770	
주택 상생 과	성산시영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	사무 관리비	140,083,000	140,083,000	19,433,820	120,649,180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 계연도 내 미집행 사업비용 을 사고이월 하고자 함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설비	646,022,000	559,900,000	168,000,000	391,900,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1.2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진	시설비	395,730,000	170,147,180	85,073,590	85,073,590	준공기한 미도래(2025.8.8.)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2건, 3,605만 1,500원을 사고이월함.

[건축안전특별회계 사고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총 2건			82,000,000	70,735,500	34,684,000	36,051,500	
건축 지원 과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설비	60,000,000	49,549,500	34,684,000	14,865,500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4회계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함
	공사장 가림벽 다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무 관리비	22,000,000	21,186,000	-	21,186,000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4 회 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 함

7. 기금 결산

- 기금 : 없음

8.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 : 없음

9.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9억 6,200만 500원이고 징수결정액 44억 652만 1,9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3.26%인 32억 2,808만 2,51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7,843만 9,480원임. 부서 특성상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 간의 큰 차이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며, 이는 모든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수납액 대부분이 부과는 되었으나, 실제 징수되지 않은 체납성 수입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부서별 체납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근 3개년 평균 수납률을 반영한 보수적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겠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23억 3,207만 4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3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억 9,046만 2,770원,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276만 2,770원, 집행잔액 32억 5,462만 2,630원으로 불용률 47.93% 임. 높은 불용률은 주택상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수립용역’의 미집행과 도시계획과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사업 철회에서 기인됨.

- 3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주택상생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100%)’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30%)’, 도시계획과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99.98%)’, 건축지원과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63.08%)’ 및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30.50%)’, 부동산정보과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100%)’ 및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38.73%)’ 임.
-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 앵커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홍대·합정 일대의 출판·인쇄업체를 집적하고 허브 기능을 수행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312억원 규모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공공부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대규모 정책사업임.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 부서까지 구성하는 등 조직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경위 및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 연속성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여건 분석 등 사전 행정 절차의 내실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며,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각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2)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있음.

(1)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5,000만원으로 100%를 수납하였음.
- 수납액 전부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전년도이월사업비’ 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 9,150만원 중 3,64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5,507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80.98%임.
-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은 대장홍대선 도시철도사업과의 노선 중첩 및 레드로드 조성사업과의 기능적·정책적 충돌로 인해, 당초 계획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이는 단순한 미집행 사례에 그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의 법적 관계가 수반되므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법적·재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 기반시설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이 미흡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재정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축안전특별회계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건축지원과에서 예산현액 8억 7,834만 3,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 10억 2,371만 4,171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세외수입 대부분은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그 자체가 제재 목적보다는 행정명령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함. 따라서 실제 징수 가능성 및 납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징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당초 세입목표와 실징수액 간의 현저한 괴리를 초래함.
- 이러한 세입 과편성은 결과적으로 결산상 세입부족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재원 확보 차질, 재정운용의 왜곡, 그리고 세입 예산의 신뢰성 저하 등 재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징수 실적과 집행 가능성 등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전 고지 및 이행 유도 노력 강화, 현실적 징수목표 설정 등을 통해 세입예산의 실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출결산은 건축지원과에서 예산현액 8억 7,834만 3,000원 중 7억 4,254만 2,429원을 지출하였고, 3,605만 1,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9,378만 571원으로 불용률은 10.68%임. 해당 사업으로는 건축물 예방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25.19%)’,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0.53%)’ 및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3.7%)’ 등이 있음.
- 건축물의 공공안전 확보 및 건축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된 건축 안전특별회계는,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예산 불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현황 등을 종합해볼 때, 정책 사업 기획 및 집행계획의 미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미강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보다 많은 전문인력 확충 및 권한 위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업사업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 일반회계의 예산 변경은 주택상생과에서 총 7건이 있으며, 변경금액은 2,810만원임.

- 사업별 변경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례집 제작관련 예산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함.
-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 예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방문 신고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추가 구매로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동 예산 사무관리비로 변경함.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망원동 416-53번지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관련 일간신문 광고료 지급을 위해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로 변경함.
- 주민설문조사 우편 발송 비용 예산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함.
- 민간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참여 전문가 수당 지급으로 ‘지역 주택조합 실태조사’ 예산 60만원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 사무관리비로 변경함.
- 공덕제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 공람 사항 토지등 소유자 등에 통지를 위한 우편 비용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함.
- 이 같은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변경사용과 전용제한 편성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문제는 없으나,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재량에 따라 예산변경을 남용할 경우 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전용과 변경은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은 없음.

4)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사업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주택상생과 1건, 도시계획건 1건), 4억 9,284만원으로, 예산현액 7억 9,573만원의 61.9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상생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진’은 공덕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9,284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은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4억원 전액을 이월함.
-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없음.
-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전부 주택상생과에서 총 3건이 있어, 5억 9,762만 2,270원으로, 예산현액 11억 8,183만 5,000원의 50.57%를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상생과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사업’이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없어 1억 2,064만 9,180원을 이월하였고,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지원 추진’은 준공기한이 각각 2026년 1월 21일과 2025년 8월 8일로서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이월함.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건축지원과 총 2건, 3,605만 1,500원으로 해당 용역사업의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됨.
-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및 집행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6)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2025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60
----------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관리국)

나. 제 출 일 : 2025. 5. 23.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3,255,263	3,023,237	232,026	7.67%
일반회계	2,429,084	2,402,177	26,907	1.12%
특별회계	826,179	621,060	205,119	33.03%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894,038	2,547,946	346,092	13.58%
일반회계	2,067,859	1,926,886	140,973	7.32%
물건비	1,151,825	1,013,525	138,300	13.65%
경상이전	193,820	193,820	0	0.00%
자본지출	719,541	719,541	0	0.00%
예비비및기타	2,673	0	2,673	순증
특별회계	826,179	621,060	205,119	33.03%

3.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067,859	1,926,886	140,973	7.32%
주택상생과	1,110,577	971,977	138,600	14.26%
도시계획과	119,103	119,103	0	0.00%
건축지원과	313,180	312,442	738	0.24%
부동산정보과	524,999	523,364	1,635	0.31%

나. 특별회계(건축안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26,179	621,060	205,119	33.03%
건축지원과	826,179	621,060	205,119	33.03%

4.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일반회계(증·감액 및 신규사업)

(단위:천원)

부서·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택상생과 1)중동·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138,300	0	138,300

나.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택상생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	0	300
1)2023년 정산동·망원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자	300	0	300
건축지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38	0	738
1)2023년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79	0	479
1)2023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이자	259	0	259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부동산 정책 보좌	국고보조금반환금	895	0	895
	1)20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48	0	48
	1)2024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480	0	480
	1)2024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367	0	367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740	0	740
	1)2024년 공인중개사 교육 이자	102	0	102
	1)2024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126	0	126
	1)2024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218	0	218
	1)2024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169	0	169
	1)2024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사업 이자	125	0	125

다. 국비 및 시 · 도비 반환금

○ 건축안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축 지원 과	예탁금	438,644	244,922	193,722
	1)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438,644	244,922	193,722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11,397	0	11,397
	1)2023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이자	2,517	0	2,517
	1)2023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행잔액 및 이자	2,251	0	2,251
	1)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이자	1,318	0	1,318
	1)2024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행잔액 및 이자	5,311	0	5,311

5.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32억 5,5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202만 6,000원(7.67%) 증가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90만 7,000원(1.12%)이 증가한 24억 2,908만 4,000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11만 9,000원(33.03%) 증가한 8억 2,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28억 9,40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097만 3,000원(7.32%) 증가된 20억 6,78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11만 9,000원(33.03%) 증가된 8억 2,617만 9,000원임.

나.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주택상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9억 7,197만 7,000원에 1억 3,860만원 증액된 11억 1,057만 7,000천원으로 약 14.26% 증가함.
 - ‘중동·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3,83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만원을 편성함.
- ‘건축지원과’는 기정액 3억 1,244만 2,000원에 73만 8,000원 증액된 3억 1,318만원으로 약 0.24% 증가함.
 -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3만 8,000원을 편성함.
-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 5억 2,336만 4,000원에 163만 5,000원 증

액된 5억 2,499만 9,000원으로 약 0.31% 증가함.

- 각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9만 5,000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4만원 편성함.

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건축지원과’는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6억 2,106만원에 2억 511만 9,000원 증액된 8억 2,617만 9,000원으로 약 33.03% 증가함.
-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억 3,864만 4,000원으로 1억 9,3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함.
- 2023년·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39만 7,000원을 편성함.

6.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가. 세입예산

-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억 2,9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0만 7,000원(1.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2,6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11만 9,000원(33.03%)을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액 편성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690만 7,000원임.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 증액 편성은 ‘잉여금’ 1억 9,915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596만 8,000원으로 총 2억 511만 9,000원임.
- 이같이 세외수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구조적 과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안전 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외형상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집행력이 부족한 예산집행으로 건축안전 정책의 실효를 저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잉여재원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은 회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반복적 불용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집행률의 분석을 통해 건정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상생과가 ‘중동·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완료를 위

해 1억 3,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수립 중인 중동·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처리를 위한 준공금 지급비용으로 파악됨.

2) 건축안전 특별회계

-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라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음.
- 2025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건축지원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억 3,864만 4,000원으로 1억 9,3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2023년·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행잔액 및 이자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39만 7,000원을 편성함.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은 긴급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및 취소에 따른 감편성 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것이나,
-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²⁾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

2)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도 개별부서 추계 등을 수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김 자 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